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5465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5465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2211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장근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김명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 이은수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4. 7.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221175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8,356,487원 및 그 중 152,178,512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2023.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6,177,975원에 대하여는 2023.

1. 11.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152,178,512원 및 그 중 143,960,443원에 대하여 2021.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3.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8,35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C는 2019. 3. 23. E와 사이에 광명시 F건물 제4층 G호(이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10.부터 2021.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8.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9. 4. 10.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전세금안심대출 및 이에 대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 권리보험

1) 원고는 2019. 4. 10. C와 사이에,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대출 만기일을 2021. 5. 7.로 하여 1억 4,4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D전세금안심대출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인 E 명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과 관련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 적용되는 ‘보증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는 보증업무위탁 협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주채무자 C, 보증금액 1억 4,400만 원, 보증기간 2019. 4. 10.부터 2021. 5. 7.까지로 정하여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보증의사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 이 사건 보증약관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와 사이에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보통약관이 적용되는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운영에 대한 업무협정(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협정’)을 체결하였고,

업무협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관하여 보험청약을 하고 피고 B이 이를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110%이고(다만, 원고가 대출잔금인 143,960,443원의 110%인 158,356,487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이 사건 업무협정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1) C는 2019. 9. 30.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6103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1)

2) C는 2019. 10. 23. 이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C의 전출

C는 2019. 10. 30.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여 광명시 H건물 제5층 I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퇴거 당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며, 임대인인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의 보증금, 보험금 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들의 거절

1) 원고는 2020. 4. 17.경 피고 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 보증공사는 2020. 6. 9.경 “임차인의 무단전출에 따른 대항력 상실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는 2020. 6. 15. 피고 B에 이 사건 업무협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당시 피고 보증공사에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점에 면책사유가 생기더라도 피고 보증공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1) 주위적으로, C가 2019. 9. 30.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 10. 23. 이후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예비적으로, C의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보증공사가 면책된다면,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보증공사

-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B만 항소를 하고 피고 보증공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미 소송이 종료되었다.
- 2) C의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 따라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

다. 피고 B

- 1) C는 E와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빌라에서 전출하였고, C가 피고 보증공사에 이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E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C의 전출을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서 피고 보증공사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전세계약기간 중의 무단전출’이라고 볼 수 없다.
- 2) C의 개인회생신청 등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보증공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즉시 면책되었다. 그 후 C의 무단전출 등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책임 면책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그 책임이 면책되고 피고 B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보증공사를 상대로 임차인 C가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피고 B를 상대로 C의 무단전출로 인하여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면 피고 B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는 ‘C의 전출로 인하여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에 따라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1심판결의 확정ى 차단되고 이 사건 소송은 전체로서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가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피고 보증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의 면책사유 발생

앞서 본 증거들과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E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이고, C가 그 이후인 2019. 10. 30.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실, C가 구상금채무 등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보증공사에 C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빌라에서 무단전출한 행위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전세계약의 연장 등으로 보증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에는 특약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약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C는 2019. 10. 30.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고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하였고, 위 퇴거 당시 피고 보증공사에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도 아니하였다.

② 또한 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C가 2019. 3. 29. 피고 보증공사에 “위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이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인정되는 대항력을 상실하여 전세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보증회사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이의 없이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약약서에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바 있다.

③ 위 면책사유에서 ‘전세계약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경우의 예시를 든 것으로 보이므로(2019. 9. 27. 개정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에서는 ‘특약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전세계약기간 중에 상실한 경우에만 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 조항은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등 참조), C가 이 사건 빌라에서 전출한 시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C가 무단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위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회수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는지 등은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좌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책임 면책

이와 같이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의 면책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은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전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후에 위 면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①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을 보증하는 한편 C의 구상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C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흠결로 인하여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② 임차인의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위 면책사유의 발생 시기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근거 규정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는 면책사유의 발생시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전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면책사유의 발생 시기를 제한하여 해석할만한 근거가 없다.

③ 이 사건 보증약관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주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등의 특약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특약보증채권자는 사고사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 보증공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25조 제1항은 특약보증채권자는 특약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고 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며, 제24조 제3항은 특약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보증약관은 특약보증사고사유의 발생 및 통지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구별하고 있고, 특약보증사고사유의 발생 및 통지만으로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피고 보증공사에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보증공사에 C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관에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도

사후적인 우연한 사정으로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사고의 발생 및 통지만으로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보증공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으로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B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와 같이 C의 무단전출에 따른 면책사유의 발생으로 피고 보증공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특약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대출금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업무협정 제8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하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대출원금 143,960,443원에 대하여 C의 대출이자 연체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2021. 4. 16.까지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연 3%를 가산하여 적용한 지연이자의 합계액인 158,400,026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한도인 보험가입금액 158,35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7.부터 2023.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대출원금 143,960,443원에 대하여 3%의 연체가산율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연체가산율은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서 정한 것일 뿐,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될 근거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 제5조는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률로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율 연 3%를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때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C가 2019. 9. 30.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C의 개인회생신청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대출원금 143,960,443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이자율에 연체가율 연 3%가 가산되는바(다만, 원고는 C의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연체가율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한다), 2019. 10. 24.부터 2021. 4. 16.까지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이자율에 연체가율 연 3%를 가산하여 계산한 대출원리금 합계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158,400,026원이고, 이는 보험금 지급한도인 보험가입금액 158,356,487원을 초과한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협정에 적용되는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은 피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이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② 피보험 임차권 취득시의 전월세자금대출 채권 원금, 그에 대한 이자, 연체 수수료 등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가산되는 연 3%의 연체가산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 B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는, 2019. 10. 24.부터 2021. 4. 16.까지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이자율에 지연이율 연 3%를 가산하여 계산한 대출원리금 합계인 위 158,400,026원과 보험가입금액 158,356,487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158,356,487원이 된다. 그리고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58,356,48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청구한 152,178,5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4.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3.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하여 청구한 6,177,9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3. 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김동규, 판사 송승훈

별지

1) 위 법원은 2020. 6.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20. 11. 1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